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대범죄경력자에 대한 중개업 결격기간 강화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34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제220783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중개업 등 종사제한기간을 최대 20년 으로 연장(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3
나. 관계 조문 정비(안 제38조제1항)	23

I.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제220783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 24.

다. 회 부 일 : 2025. 1.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경우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현행 결격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등).

3. 검토의견

가.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중개업 등 종사제한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략) <u><신설></u>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u>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u> <u>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u> <u>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u>

현행	개정안
4. <u>금고</u>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11. (생략) 12. <u>사원</u>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5. 제4호 각 목에 따른 죄 외의 죄를 범하여 <u>금고</u>----- ----- ----- ----- 6. ~ 12. (현행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3. -----제12호----- ----- ----- ② -----제12호----- ----- ----- ㄱ. ----- ③ -----

현행	개정안
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 ----- -----제12호----- ----- -----.

개정안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이하 “결격사유”라 함)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죄(이하 “중대범죄”라 함)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
 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0조제1항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의 적용기간을 현행 ‘3년’
 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 제9조제1항1)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미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2)가 후발적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등록관청은 현행법 제38조제1항제3호3)에 따라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또한, 현행법 제10조제2항4)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5)이 될 수 없고, 등록관청은 현행법 제39조

1)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제1호6)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이를 종합하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함)으로 종사하려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안내 등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인 주택 등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상 해당 주택 등에 거주 중인 사람이나 중개의뢰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범죄를 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종사제한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중개의뢰인 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대·강화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

6)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⁸⁾.

한편, 결격사유의 확대·강화는 중개업의 영위와 관련한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중개업무나 중개의뢰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전문자격사 등에 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의 필요성이 높은지, 제한의 정도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을 특정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적용기간을 가중한 입법례와 비교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음.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2014헌바446(병합) 결정).

〈표 1〉 결격사유 적용기간 가중 입법례 비교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19조의2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2항	「우편법」 제2조제6항	개정안
적용 대상	택시운수 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 (배달대행기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우편물 집배업무 종사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제한 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대상 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형법」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형법」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형법」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19조의2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2항	「우편법」 제2조제6항	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제15조(제14조 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제15조(제14조 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1) 결격사유 적용기간 가중(안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안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개업공인중개사등으로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임.

결격사유의 적용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결격사유 적용기간을 최대 20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직업으로의 진입을 장기적으로 막는 효과를 유발하는바, 결격사유 적용기간이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결격사유 적용기간 가중 규정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9)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해당 규정은 특정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면서도 결격사유의 적용기간이 가중되는 대상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자격취득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적·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¹⁰⁾이며,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10)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1295호, 2012. 2. 1. 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확일적으로 장기간 동안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하여,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2014헌마446(병합) 결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1686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참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례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자), 「우편법」(우편물 집배업무 종사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배달대행기사)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의 결격사유 적용기간을 가중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중개과정에서의 국민안전 보장 필요성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이상 범죄 경력자의 개설등록 제한기간(3년)보다 장기간인 20년의 범위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대상 주택 등에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방문이 필수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한 종사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11)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음.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대상범죄의 범위(안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안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은 결격사유 적용기간이 가중되는 중대범죄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살인, 강간, 강도, 마약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등 대상범죄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상범죄 및 종사제한 대상자의 범위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과 중대범죄 경력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보호법익과의 비교형량, 관련 입법례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간 주요 차이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결격사유 적용기간 가중 대상범죄의 범위¹²⁾

근거법률	주요 범죄의 종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	◦ 살인, 존속살해 ◦ 약취, 유인, 인신매매 ◦ 강간, 강제추행 ◦ 강도, 특수강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미성년자 약취·유인 ◦ 5명 이상의 공동 상습 강도·절도 ◦ 상습 강도상해 ◦ 보복범죄 ◦ 마약사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 마약류 수출입·매매 또는 알선 ◦ 불법 마약류 제조 목적 수출입·소지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수수·조제·투약·제공 등 ◦ 불법 마약류 소지, 소유, 사용, 제조, 조제, 투약 등 ◦ 불법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제공, 재배 등 ◦ 불법 마약취급 허가증 대여, 양도 등

근거법률	주요 범죄의 종류
「형법」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 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상습죄 또는 그 미수죄 ◦ 강도특수강도, 인질강도 등의 상습죄 또는 그 미수죄 ◦ 장물의 취득·알선 등의 상습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 약취, 유인, 인신매매 또는 그 미수죄 ◦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에 대한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모집·운송·전달 등 또는 그 미수죄 ◦ 강간, 강제추행 등 또는 그 미수죄 ◦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등 ◦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또는 그 미수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촬영물과 편 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또는 그 미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 ◦ 아동·청소년 대상 특수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살인·치사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관련 알선행위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조항

안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등 살인, 존속살해, 약취, 유인, 강간, 강도 또는 특수강도 등의 죄를 결격사유 적용기간이 가중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를 택시운전자격의 취득제한기간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비교할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제5조의8’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12) 보다 상세한 사항은 ‘참고 1’ 및 ‘참고 2’ 참조.

〈표 3〉 유사 입법례 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죄 비교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19조의2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2항	「우편법」 제2조제6항	개정안
적용 대상	택시운수 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 (배달대행기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우편물 집배업무 종사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대상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¹³⁾은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중개업과의 관련성이 낮은 측면이 있고 같은 법 제5조의8은 삭제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중대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임.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적용 조항

안 제10조제1항제4호라목은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함),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등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장물취득·알선 등의 상습죄를 결격사유 적용기간이 가중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음.

〈표 4〉 유사 입법례 간 「형법」 적용 범죄 비교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19조의2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2항	「우편법」 제2조제6항	개정안
적용 대상	택시운수 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 (배달대행기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우편물 집배업무 종사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대상 범죄	「형법」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형법」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형법」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의 접촉이 잦고 중개대상물인 주택 등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은바 절도 또는 강도 등의 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각각 택시운수종사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지 방문 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종사 제한요건을 규정한 입법례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경우 종사제한기간을 가중하는 대상범죄에 「형법」 상 상습절도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의 종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제2항제1호라목¹⁴⁾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 라목¹⁵⁾ 또는 안 제10조제1항제4호라목과 다르게 「형법」 제363조¹⁶⁾에

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16)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른 상습장물죄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주택 등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은 중개업의 특성상 상습장물죄에 대해서도 종사제한기간을 가중할 필요성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신설(2024. 2. 20. 개정) 시 「형법」 제363조에 따른 상습장물죄는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의 대상범죄에서는 「형법」 제363조가 제외되었다는 점¹⁷⁾을 심사 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주택 등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은 중개업의 특성상 상습 절도죄와 상습장물죄에 대하여 결격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조항

안 제10조제1항제4호마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25992호)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및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3. 12. 19.) 회의록 참고.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등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특수 강도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를 결격사유 적용기간이 가중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음.

〈표 5〉 유사 입법례 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범죄 비교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19조의2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2항	「우편법」 제2조제6항	개정안
적용 대상	택시운수 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 (배달대행기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우편물 집배업무 종사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대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입법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제1호라목과 「우편법」 제2조제6항제1호라목은 개정안과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에 따른 죄는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14조의 미수범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1항라목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마목은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¹⁸⁾의 기수범(既遂犯)과 아울러 그 미수범에 대해서도 자격취득제한을 강화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와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¹⁹⁾의 기수범·미수범에 대해서도 자격취득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중개의뢰인 등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²⁰⁾.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 참고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라목과 「우편법」 제2조제6항제1호라목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각 2020. 3. 24. 신설)이 자격취득제한이 가중되는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현행 규정을 종합하면, 해당 범죄의 미수범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와 「우편법」 제2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자격취득제한이 가중되는 반면, 해당 범죄의 기수범은 자격취득제한이 가중되지 않아 같은 죄의 기수범보다 미수범의 자격취득제한이 더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범죄 해당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규정	기수범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해당	해당
제14조	미해당	미해당
제14조의2	미해당	해당
제14조의3	미해당	해당

(3) 중개법인의 개설등록 결격사유 강화(안 제10조제1항제13호)

안 제10조제1항제13호²¹⁾에 따르면 사원 또는 임원 중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안 제38조제1항제3호²²⁾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중개법인”이라 함)가 안 제10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중개법인의 임원뿐 아니라 사원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포함²³⁾되고 중개법인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²⁴⁾,

21) 「개정안」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3.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2) 「개정안」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2호·제1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舊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전부개정)에 따라 임원뿐 아니라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제한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고, 법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소속 사원·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²⁵⁾ 등을 종합해 볼 때,

현행 법령은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개업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자격요건과 책임을 요구한다고 보이는바,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중대범죄 경력자인 경우 중개법인의 개설등록 또는 중개업 영위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국토교통부는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중개법인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표자 못지 않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25)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관계 조문 정비(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7호----- -----제12호·제13호----- -----. -----제13호----- ----- ----- -----.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안 제38조제1항의 개정은 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및 기존 조항의 이동을 고려하여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 제39조(업무의 정지)의 개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제39조제1항제1호²⁶⁾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격

26)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중대범죄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제39조제1항제1호는 제10조제2항과 상응하도록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10조제2항²⁷⁾에 따라 조문이 개정되는 경우 현행법 제39조제1항
제1호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교통부도 같은
취지에서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 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 ----- ----제12호----- ----- -----.

참고 1

결격사유 적용기간 가중 대상범죄 상세 사항

구 분	내 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의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5조의2에 따른 죄 (마약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죄 등)
「형법」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제332조(상습범) ※ 제329조(절도), 제330조(아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41조(상습범) ※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 제363조(상습범) ※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구 분	내 용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미수범) ※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참고 2

중대범죄(개정안과 同) 종류별 진입제한 입법례 등

자료: 국토교통부

□ 중대범죄(개정안과 同) 종류별 진입제한 입법례

중대범죄 규정 법률	박덕흠 의원 공인중개사법 발의안 조항 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령
특정강력 범죄법	제2조제1항 제1호 살인죄	20년	20년	20년
	제2호 유인 및 인신매매	20년	20년	20년
	제3호 강간 및 강제추행(1)	20년	20년	20년
	제4호 강간 및 강제추행(2)	20년	20년	20년
	제5호 절도와 강도의 죄	20년	20년	20년
	제6호 폭력행위 단체 구성의 죄	20년	20년	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2 미성년자 약취, 유인, 납치 가중처벌	20년	20년	20년
	제5조의4 상습강도 절도죄 가중처벌	20년	20년	20년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 가중처벌	20년	20년	20년
	제5조의9제1항~제3항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20년	20년	20년
	제5조의9제4항 재판 관련 증인에게 위력 행사	6년	6년	6년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20년	20년	20년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	20년	20년	20년
	제58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0년	20년	20년
	제59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0년	20년	20년
	제60조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20년	20년	20년
	제61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10~15년	10~15년	10~15년
	제62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6~9년	6~9년	6~9년
	제63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4~6년	4~6년	4~6년
형법	제64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2년	2년
	제332조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범	18년	-	-
	제341조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상습범	20년	-	-
	제363조 장물의 취득, 알선 상습범	20년	-	-
성폭력 처벌법	제2조제2호 약취, 유인을 통한 성착취, 성매매	20년	20년	20년
	제3호 강간과 강제추행	20년	20년	20년
	제4호 강도강간	20년	20년	20년
	제3조~제9조 특수강간	20년	20년	20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0년	-	20년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20년	-	20년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20년	-	20년
	제15조 제3~9조 및 제14조~14조의3 미수범	20년	20년	20년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제2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간 등	20년	20년	20년

□ 타 자격사 중대범죄 규정 관련 결격사유 조항 입법례

전문자격사	건축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의사	간호사
중대범죄 규정 법률에 대한 결격사유 조항 존재 유무	X	X	X	X	X	X	X	X	X	X